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예우를 위한 관련법 제정 논의*

정태일** 충북대학교

연정례*** 충북대학교

논문요약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주제어 : 부마민주항쟁, 5·18유공자법, 예우, 전재수 발의안, 김희곤 발의안

* 이 논문은 2021년 10월 7일에 “부마민주항쟁의 진실규명 및 정신계승과 관련자 예우”를 주제로 개최된 10·18민주항쟁연구소·한국정치사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 추계공동학술회의의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국가가 형성되고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한국이 광복을 이룬 것은 한반도를 넘어 해외에서 활동한 수많은 애국열사와 남녀노소를 불문한 민중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은 광복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 민주주의를 도입해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정치변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건국과정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한국은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라 하였지만 대한건국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초는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의 개정헌법까지 유지되었다.

1962년의 제3공화국 개정헌법 전문에서는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라 하였지만 기존의 헌법처럼 건국과 국가건설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1972년의 제4공화국의 헌법인 유신헌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의 제5공화국 개정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자유와 권

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이라 하여 3·1운동을 제외하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정신을 퇴색시켰으나 헌법 제30조 5항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7년의 제6공화국 개정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각인의...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이라 하여 국가건설과 민주주의의 성장에 희생한 국민들의 저항정신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1980년의 개정헌법에서 도입된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헌법 제32조 6항에서 유지되었다.¹⁾

국가건설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개정헌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은 1984년 8월 2일에 제정된 이후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참전유공자법)」이 1993년 12월 27일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독립유공자법)」은 1994년 13월 31일에 제정되었다. 2000년대 들어 국가를 위해 공헌 및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률은 확대되어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5·18유공자법)」이 2002년 1월 26일에,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은 2004년 1월 29일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기술유공자법)」은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되었

1)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제10차 헌법개정안 전문에는 3·1운동, 4·19혁명에 10·16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하였다(차수봉·신승한 2018, 560).

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한 2021년 8월 17일에 일부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9호)」을 분석한 후 국회에 계류 중인 ‘10·16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과 ‘10·16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검토

1. 선행연구의 검토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배경과 역할, 다른 민주항쟁과의 연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는 홍순권(2011) 등에 의해 연구된 것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연구성과와 연구경향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역할은 김경호(2000), 조정관(2009)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부마민주항쟁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인권외교 등이, 대내적으로 개발독재와 정치탄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부마민주항쟁이 유신체제를 붕괴시켜 한국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민주항쟁과의 비교분석에서 보면, 2016년 촛불집회와 부마민주항쟁은 정치문제와 사회경제적 불만이 동인이라는 정치사적 동질성을 가진다고 김재홍(2018)은 검토하였고, 유영국(2004)은 억압적 독재정권은 민중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관

련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연구는 이보형(2021)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미진한 편이다. 이보형은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관련자와 그 유족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30일 이상 구금된 자 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관련자, 유족들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관한 논의를 위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보상과 예우에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대한 논의도 신일섭(2005), 이희성(2009), 진광석(2009), 민병로(2009)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미진한 편이다. 신일섭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희성과 민병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진광석에 따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국가유공자법에 포섭하는 방법,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 현행법을 통한 해결방법 등이 있으나 법리적으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5·18예우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와 보상의 현황을 검토한 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한 「5·18유공자법」을 토대로 법률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마민주항쟁의 전개와 피해보상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5일간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 시민들이 중심으로 되어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반대 등을 주장하며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의미한다. 더욱이 10월 26일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면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다(정주신 2018; 정주신 2019).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약 500명의 학생이 모여 박정희의 유신 정권에 대한 반정부시위를 시작하자 동아대학교 학생들까지 합류하여 부산 시내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였다. 1979년 10월 17일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화이트칼라, 노동자, 상인, 무직자 등까지 시위대에 동참하여 그 규모가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늘어났다.²⁾ 당시 시위대는 KBS부산방송국, 경남도청, 부산세무서, 경찰서 등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는 장기독재에 대한 저항과 방송국의 소극적인 보도행태,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부산의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시위대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부산에서의 시위가 비상계엄으로 어려워지면서 1979년 10월 18일에 마산지역의 경남대학교 1,000여명의 학생들이 마산시내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하자 여기에 시민들이 가담하여 ‘독재자 박정희 파썸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청, 경찰서, 민주공화당사, 마산방송국 등의 언론기관에 투석을 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조정관 2009, 74). 1979년 10월 19일에는 경남대학교, 경남공업전문대학, 고등학생 등이 합세하며 시위대의 규모가 8,000여명에 달하여 마산 시내는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마산지역의 시위가 더욱 격화될 기미를 보이자 박정희 정권은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과 청원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1979년 10월 17일에 시작된 부산지역의 시위와 1979년 10월 18일에 시작된 마산지역의 대규모 반정부시위는 부산지역에서 공수부대가

2) 1979년 당시 부산과 마산 공업단지의 중소기업 휴·폐업과 적자경영은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하층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양극화 심각해져 이들이 시위대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김원 2006;차상환 2008;김선미 2016;서익진 2020;임미리 2021;남종석·원동필 2019).

동원되어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하였고, 마산지역에서도 군이 동원되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소강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정주신 2017, 62-7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과 마산 등으로 확산된 시위대는 대규모 대중항쟁만큼이나 상당한 피해를 가져왔다. 부마민주항쟁의 피해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3명, 시위에 참여하여 검거된 인원은 부산 1,058명, 마산 506명으로 총 1,56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구속 121명, 즉결심판 651명, 훈방 792명으로 집계되었다(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0, 98). 당시 부마민주항쟁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규모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며, 일부 해직교사와 학사징계 등의 피해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조사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피해 현황이다.

<표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피해 현황

(단위: 명)

구분	사망	검거	구속	즉결심판	훈방
인원	3	1,564	121	651	792

출처: 국가보훈처(<https://www.mpva.go.kr>).

부마민주항쟁에 따른 보상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민주화보상법)」과 2013년 6월 4일에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보상 10명, 명예회복 29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상에서 상이 10명, 명예회복에서 유죄판결 15명, 학사징계 3명, 해직 11명이다.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보상 55명, 명예회복 328명이다. 세부적으로 보

면, 보상에서 사망 1명과 상이 54명, 명예회복에서 유죄판결 109명, 학사징계 9명, 해직 20명, 기타 190명이다. <표 2>와 <표 3>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인정 현황이다.

<표 2>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의 인정 현황
(단위: 명)

계	보상			명예회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학사징계	해직	기타
39	10	-	10	29	15	3	11	-

출처: 국가보훈처(<https://www.mpva.go.kr>).

주1) 기준: 2020년 12월

주2) 보상금 등 지급액: 보상금 162백만원, 생활지원금 250백만원으로 총 412백만원

주3) * '구금'도 포함

<표 3>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한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의 인정 현황
(단위: 명)

계	보상			명예회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학사징계	해직	기타**
383	55	1	54	328	109	9	20	190

출처: 국가보훈처(<https://www.mpva.go.kr>).

주1) 기준: 2021년 5월

주2) 보상금 등 지급액: 보상금 2,189백만원, 생활지원금 425백만원으로 총 2,614백만원

주3) * '구금'도 포함

주4) ** '즉결·훈방'은 183명, '수배'는 7명

한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관련 단체를 보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18년 8월 22일에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³⁾과 1989년 7월 25일에 창립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⁴⁾가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1994년 4월 28일에 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된 후 1997년 1월 24일에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학술연구, 교육, 기념사업,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학술연구, 교육, 기념사업, 부산 민주공원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Ⅲ.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 7월 8일에 김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10·16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약칭: 김희곤안)」⁵⁾과 2021년 6월 22일에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10·16부마민주항쟁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약칭: 전재수안)」⁶⁾이 있다. 2개의 발의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5·18유공자법)」의 내용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5·18민주유공자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2021년 6월 22일에 발의된 「전재수안」과 「5·18민주유공자법」을 비교하며, 나아가 「전재수안」과 「김희곤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http://buma1979.or.kr>(최종검색일: 2021/09/28).

4) <http://www.ohminju.or.kr>(최종검색일: 2021/09/28).

5) 발의자는 김희곤, 태영호, 정동만, 강기윤, 서범수, 하영제, 엄태영, 이현승, 전봉민, 안병길, 윤한홍, 강민국, 이주환, 백종현, 최승재, 황보승희, 김미애 등 17명의 의원이다.

6) 발의자는 전재수, 김정호, 맹성규, 박재호, 송옥주,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양이원영 등 10명의 의원이다.

1. 「5·18유공자법」의 주요 내용 검토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후 2021년 8월 17일 일부 개정되기까지 총 45번의 타법 개정과 일부 개정이 있었다.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2002년에 「광주민중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2004년 1월 20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2021년 1월 5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5·18유공자법)」로 되었으며, 2021년 8월 17일에 동일 법률명으로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를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5·18유공자법」은 총9장 10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⁷⁾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기본이념, 대상자 등이며, 제2장은 교육지원, 제3장은 취업지원, 제4장은 의료지원, 제5장은 대부, 제6장은 단체설립 및 지원, 제7장은 그 밖의 지원, 제8장 보칙, 제9장은 별칙이다.

첫째, 총칙으로 예우에 대한 사항이다.

「5·18유공자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목적으로(제1조) 하며,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제2조) 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제3조) 한다.

「5·18유공자법」의 예우 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자로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이 된 자(제7조)로 다음과 같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 포함)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다. 둘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7) <https://www.law.go.kr>(최종검색일: 2021/09/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이다. 셋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다.

「5·18유공자법」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로 한다(제5조). 5·18유공자법'의 예우원칙은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한다(제6조).

둘째, 교육과 취업지원에 대한 사항이다.

「5·18유공자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는 동시에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우선, 교육지원이다. 「5·18유공자법」은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②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①의 자녀, ③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①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되 ①의 자녀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한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제12조).

「5·18유공자법」은 교육지원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다만, 외국인학교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다만, 대

학원과 대학원대학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제12조의 2).

「5·18유공자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다(제14조).

「5·18유공자법」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수업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제16조), 외국인 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의 2). 또한 국가보훈처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취업지원이다. 「5·18유공자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5·18유공자법」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 공립학교와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 사립학교를 지정하고 있으며(제21조), 취업지원기관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를 혹은 5퍼

센터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5·18유공자법」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국립학교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함)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제23조). 여기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고용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용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하며,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24조의 2).

한편, 「5·18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제30조). 여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31조).

셋째, 의료지원과 대부에 대한 사항이다.

「5·18유공자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의료지원이다.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본인의 고의에 의해 생긴 질병을 제외하고 그 상이처(傷痕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4조).

「5·18유공자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5·18유공자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35조),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7조). 그 이외에도 「5·18유공자법」은 심리적 재활,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대부사항이다. 「5·18유공자법」은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제40조)에 대해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에 따라 보훈기금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제42, 43조),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4조).

「5·18유공자법」에 따라 대부금은 농토구입대부일 경우 3년 거치(據置) 후 12년, 주택대부일 경우 20년, 사업대부일 경우 15년, 생활안정대부일 경우 5년이며,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6조). 또한 「5·18유공자법」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였다(제54조).

넷째, 단체설립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제55조),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하되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18유공자법」에 따르면, 각 단체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본부 및 지부와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제56조). 여기에서 각 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은 「5·18유공자법」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5·18유공자법」 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은 「5·18유공자법」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제57조).

「5·18유공자법」에 따르면, 각 단체는 본부·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는데, 각 단체의 본부는 광주광역시,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에 두며,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61조).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5·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위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4조). 한편 「5·18유공자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7조).

다섯째,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다.

「5·18유공자법」은 양로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공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계지원금,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양로지원이다.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제84조).

②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이다.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84조의 2).

③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이다.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84조의 3).

④ 양육지원이다.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제85조).

⑤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⑥ 고궁 등의 이용지원이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⑦ 주택의 우선 공급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⑧ 기념·추모사업의 추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

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의 비교

「전재수안」은 전반적으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 지원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그 유가족에게 구체적인 지원책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9장 10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⁸⁾, 「전재수안」의 기본적인 체계는 「5·18유공자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총칙에는 목적, 정부의 시책, 적용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예우의 원칙이 있다. 목적에서 「전재수안」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5·18유공자법」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시책에서 「전재수안」이 부마민주항쟁을, 「5·18유공자법」이 5·18민주화운동을 각각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자에서 「전재수안」이 부마민주항쟁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마민주항쟁부상자, 부마민주항쟁희생자를, 「5·18유공자법」이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이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미성년 제대로 동일하다. 예우의 원칙에서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이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예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는 총칙에 대한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의 비교이다.

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S0E6V1S5J1P6W3M2H4L1Y3L5G8(최종검색일: 2021/09/28).

<표 4>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의 총칙 비교

구분		「전재수안」	「5·18유공자법」
총칙 (제1장)	제1조 목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제3조 정부의 시책	부마민주항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마련	5·18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마련
	제4조 적용대상자	부마민주항쟁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마민주항쟁부상자, 부마민주항쟁희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미성년 제매	좌동
	제6조 예우의 원칙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예우함	좌동

둘째, 지원에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이 있는데,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이 동일하다. 교육지원은 수업료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을, 취업지원은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취업능력개발을,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을, 대부지원은 300~8,000만원(이율1.3~2.3%)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표 5>는 지원에 대한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의 비교이다.

<표 5>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의 지원 비교

구분		「전재수안」	「5·18유공자법」
제2장	교육지원	수업료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좌 동
제3장	취업지원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취업능력개발	좌 동
제4장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좌 동
제5장	대부지원	300~8,000만원(이율 1.3~2.3%)	좌 동

셋째, 단체설립 및 지원은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이 동일하다.

법인격 및 정관에 따르면 단체는 부상자회, 유족회, 공로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단체는 회원, 임원, 이사회, 본부·지부 및 지회 등을 구성할 수 있고, 각 단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각 단체는 사업 및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단체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수익금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받아야 한다. <표 6>은 단체설립 및 지원에 대한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의 비교이다.

<표 6>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의 단체설립 및 지원 비교

구분			「전재수안」	「5·18유공자법」
단체 설립 및 지원 (제6장)	제61-62조	법인격 및 정관	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좌동
	제63-68조	회원, 임원, 이사회, 총회, 조직, 지부장 등	회원, 임원, 이사회, 본부·지부 및 지회 구성 등	좌동
	제69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각 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좌동
	제70-75조	사업 및 수익사업의 승인 및 취소 등	각 단체의 사업 및 수익사업, 수익사업의 승인 및 취소, 유효기간, 명의대여 금지,	좌동
	제76-77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좌동
	제78-84조	수익금의 사용 등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실태조사, 정보공개, 청문, 보조금,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좌동
	제85-89조	시정조치 등	시정조치,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회계규칙, 해산사유	좌동

넷째, 그 밖의 지원은 「전재수안」과 「5·18유공자법」이 거의 동일하다. 무의탁자 중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의 본인 또는 유족에 대한 양로지원 및 보조,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무의탁 미성년 자녀(제매)에 대한 양육지원 및 위탁, 부상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이용료 면제, 민영 및 공공주택 등 우선공급,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은 동일하다. 다만,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에 있어서는 「전재수안」이 부마 민주항쟁 관련 시설물·박물관·전시관 등의 설치와 건립을, 「5·18유공자법」이 5·18유공자 관련 시설로 되어 있다. <표 7>은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전제수안」과 「5·18유공자법」의 비교이다.

<표 7> 「전제수안」과 「5·18유공자법」의 그 밖의 지원 비교

구분		「전제수안」	「5·18유공자법」	
그 밖의 지원 (제7장)	제90-91조	양로지원 및 보조	무의탁자 중 남65세, 여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유족	좌동
	제92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유공자 또는 유가족	좌동
	제93-94조	양육지원 및 위탁	무의탁 미성년자녀(제매)	좌동
	제95조	수송시설 이용지원	부상자	좌동
	제9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이용료 면제	좌동
	제97조	주택의 우선 공급	민영·공공주택 등 우선 공급	좌동
	제98조	기념·추모 사업의 추진	기념·추모사업의 추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좌동
	제99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부마민주항쟁관련 시설물 박물관 전시관 등의 설치·건립	5·18유공자 관련 시설

다섯째, 보칙, 별칙, 부칙에 대한 「전제수안」과 「5·18유공자법」이 동일하다. 보칙에는 학습보조비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예우의 정지, 자료의 제공 요청,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위임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이 있고, 별칙에는 별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 단체 설립 준비 행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특례,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있다. <표 8>은 보칙, 별칙, 부칙에 대한 전제수안」과 「5·18유공자법」의 비교이다.

<표 8> 「전제수안」과 「5·18유공자법」의 보칙, 별칙, 부칙 비교

구분		「전제수안」	「5·18유공자법」
보칙 (제8장)	제100-106조	학습보조비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예우의 정지, 자료의 제공 요청,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위임 및 위탁 등	좌 동
별칙 (제9장)	제107-109조	별칙, 양벌규정, 과태료	좌 동
부칙	제1-7조	시행일, 단체 설립 준비 행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특례, 적용례, 경과조치	-

3. 「전재수안」과 「김희곤안」의 비교

「전재수안」은 「김희곤안」⁹⁾과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재수안」이 민주항쟁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9>는 「전재수안」과 「김희곤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표 9>에 보듯이 「전재수안」은 「김희곤안」에 대한 추가 내지는 보완이 이루어졌다. 보칙에서 5·18유공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벌칙에서 단체운영 관련 벌칙이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체 관련 양벌규정의 신설,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단축하였다.

<표 9> 「전재수안」과 「김희곤안」의 주요 내용 비교¹⁰⁾

구 분	김희곤안	전재수안	
제장 총칙	제1조 목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좌동
	제3조 정부의 시책	부마민주항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마련	좌동
	제4조 적용 대상자	부마민주항쟁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마민주항쟁부상자, 부마민주항쟁희생자	좌동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미성년 제매	좌동
	제6조 예우의 원칙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예우함	좌동

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G0P0G7A0D811P4A3J2N2K1Y0T9E7(최종검색일: 2021/09/28).

10) 제39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완하였다.

구 분		김희곤안	전제수안
제2장 교육지원		수업료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좌 동
제3장 취업지원		보훈특별고용, 가정취업, 취업능력개발	좌 동
제4장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좌 동
		-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위탁(제42조), 심리적 재활서비스 지원(제45조)
제5장 대부지원		300~8,000만원(이율 1.3~2.3%)	좌 동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	회원 복지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제61조~제89조)
제7장 그 밖의 지원	양로지원	무의탁자 중 남65세, 여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유족	좌동
	요양지원	유공자 또는 유가족 : 40~80%지원	좌동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92조)
	양육지원	무의탁 미성년자녀(제매)	좌동
	수송시설 이용지원	부상자	좌동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이용료 면제	좌동
	주택의 우선공급 기념·추모 사업의 추진	민영·공공주택 등 우선공급 기념·추모사업의 추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좌동
제8장 보칙		학습보조비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예외의 정지, 자료의 제공 요청, 위임 및 위탁 등	좌 동
		법 적용 대상 배제	* 5·18유공자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추가(103조)
제9장 벌칙		벌칙	단체 운영 관련 벌칙 신설 (제107조 제4항)
		-	단체 관련 양벌규정(제108조)
		과태료(300~500만원)	과태료(300~1000만원) 적용(제109조)
부칙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일(공포 후 3개월 이후)

IV. 결론

한국은 건국 이후 장기집권과 군사독재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국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집권세력에 저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크고 작은 희생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국가가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상과 예우와 관련해 1980년대 들어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며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19의거와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률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제정 논의는 2020년에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2021년에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2개의 법률발의안에서 제시한 법률제안의 이유는 5·18민주화운동과는 다르게 부마민주항쟁은 별도의 법률이 미비해 민주항쟁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되었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부마민주항쟁과정에서 사망, 부상 또는 구속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해 2013년 6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그리고 생활지원금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은 관련법이 없어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의 사례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8월에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였고, 2002년 7월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는 동시

에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5·18민주유공자 단체를 공법단체로써 지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그 유가족도 5.18민주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법률에 근거하여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 김 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 연구』 제29권 제2호, 427.
- 김경호. 2000.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1-21.
- 김선미. 2016.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 연구.” 『지역과 사회』 제39권, 343-374.
- 김재홍. 2018. “2016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1979 부마민주항쟁과의 정치사적 동질성.” 『정치와 평론』 제22집.
- 남종석·원동필. 2019. “부마민주항쟁에 있어서 부산지역 경제적 배경.” 『사회사상과 문화』 제22권 1호, 173-202.
- 민병로. 2009. “5·18민주유공자 보훈제도의 개선방안.”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0.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보고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마산.
- 서익진. 2020. “박정희 공업화 발전모델의 위기와 부마항쟁.”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135-171.
- 신일섭. 2005.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 유영국. 2004. “한국 정치변동과 부산시민의 정치적 역할: 4월혁명, 부마항쟁, 6월 항쟁을 중심으로” 『부산학총서』 제2권.
- 이보형. 202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비례원칙심사: 헌법재판소 2016헌마418 결정을 중심으로” 『법조』 제70권 3호.
- 이희성. 2009. “5·18민주유공자 보상법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2호.
- 임미리. 2021. “부마항쟁, 도시하층민들의 해방구: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에 관한 연구.” 『지역과 전망』 통권 제44호, 138-182.
- 전광석. 2009.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5·18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규범체계적 접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 정주신. 2017. “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 긴급조치·부마항쟁.”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2호, 62-75.
- 정주신. 2018. “10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 10·16부산항쟁과 10·18마산항쟁의 비교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제2권 1호, 5-44.
- 정주신. 2019. “마산의 민주화운동 비교분석: 1960년 3·15의거와 1979년 10·18부

마항쟁.”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2호, 5-55.

조정관. 2009. “한국 민주화에 있어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차상환. 2008. “부마항쟁과 노동자 정치사회화.”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3호, 23-45.

차수봉·신승한. 2018.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제10차 개헌안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사적 사건의 헌법전문명시의 의미:역사적 사건의 헌법기치투영과 그 과정을 검하여.” 『인문사회21』 제9권 3호, 560.

홍순권. 2011.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제27호, 1-43.

제39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희곤의원 등 17인. 2020.07.08.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635).

전재수의원 등 10인. 2021.06.22.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970).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http://buma1979.or.kr>(최종검색일: 2021/09/28).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http://www.ohminju.or.kr>(최종검색일: 2021/09/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최종검색일: 2021/09/2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최종검색일: 2021/09/2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S0E6V1S5J1P6W3M2H4L1Y3L5G8(최종검색일: 2021/09/2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G0P0G7A0D8I1P4A3J2N2K1Y0T9E7(최종검색일: 2021/09/28).

투고일 : 2021년 11월 11일 . 심사일 : 2021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5일

* 정태일은 충북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주요연구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검토”,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판적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 분석” 등 다수가 있다.

** 연정례는 충북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주요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대응전략의 비교 분석”, “인도의 핵확산과 미국-인도 안보협력” 등이 있다.

<Abstract>

Discussion on the Law Enactment for the Courtesy to Persons Related to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Chung, Tae-Il · Yeon, Jeong-Ly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courtesy of those who were sacrificed in the process of maturing democracy in Korea wer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0, and it was expanded from the National Merit Act of 1984 to the 5·18 Merit Act of 2002. But the legal basis for the courtesy to those involved in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has not been established so far. The compensation and honor recovery for those involved in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were made by 65 compensation and 357 honor recovery under the Democratization Compensation Act of 2000 and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Compensation Act of 2013. However, the courtesy for them is not realistic. The bill on the courtesy of those involved in the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is being initiated by Kim Hee-gon in 2020 and by Jeon Jae-soo in 2021. Two Bills on the courtesy of those involved in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are fully utilizing the 5·18 Merit Act.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discuss the enactment of the law on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those who have sacrificed during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their families.

Keywords :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5·18 Merit Act, Courtesy, Jeon Jae-soo's Bill, Kim Hee-gon's Bill